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149(본소), 2015나8156(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D

2. E

변론 종결 2015. 11. 26.

판결 선고 2016. 1. 21.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5. 14. 선고 2014가단19991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파주시 F 답 764㎡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19, 20,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 파주시 F 답 764㎡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19, 20,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 중 각 681/1,5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파주시 F 답 764㎡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19, 20,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 중 각 681/1,5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인 O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한혜윤, 판사 전선주

지적현황측량 감 정 도

